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12
----------	------

제출년월일 : 2009. 11. 20.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정이유

- 행정업무의 고도화·전문화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의 부재로 인하여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방만한 운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09.10.2.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우리시의 각종 유사·중복위원회의 통·폐합 및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설치 시 사전에 위원회 총괄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위원의 수는 20인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남녀 비율의 차가 20%를 넘지 않도록 함. 또한 다수 위원회 중복 위촉 금지 및 1회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둠(안 제8조).
- 다. 위원회 설치 시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존폐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14조).
- 마. 위원의 수당에 관하여 참석수당, 심사수당, 여비 등 그 종류와 기준을 정함(안 제15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예정)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9. 10. 23. ~ 2009. 11. 13.(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및 안산시 소속 기관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산시 및 안산시 소속 기관(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부서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요건) 소관부서에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위원회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을 것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소관부서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총괄 관리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위촉 후에는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소관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용역 · 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의 수는 원칙적으로 20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그 수를 정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직능별로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위원과 여성위원의 비율의 차가 2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위촉 및 임명에 있어서 동일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계법령에서 그 위원을 정한 경우
 2.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특수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3. 인력풀 형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회의는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위원회 및 2개 이상 위원회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 ④ 위원의 임기는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관련 직위로 인해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존속기한의 경과 시 자동 폐지된다.
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활동명세 통보)**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소관 위원회의 전년도 예산집행내역, 운영실적 등이 포함된 활동명세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 활동내용 등 공개)**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활동명세서를 검토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소관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정비) ①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되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업무보고를 안건으로 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한다.

②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존폐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회의 회의(서면·사이버 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참석수당(다만,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2.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의 심사수당(다만, 심사수당과 관련한 법령 등 제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중복 및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동일 위원회에서 1회 연임하고 있는 위원은 조례 제8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회에 한하여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회 미 운영 기간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조례 제14조제1항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의 기간 계산의 기산점은 2009. 1. 1.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 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안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8항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안산시 소속 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
일로 한다.

⑦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협의체의 존속기한) 협의체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⑧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⑨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7항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
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협의회의 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중 “연임할 수 있으며,” 를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으로 한다.

제13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7항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⑮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연임할 수 있으며,”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으로 한다.

제8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⑲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㉑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9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㉒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2년으로 하고”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㉔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협의회의 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㉕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 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중 “「안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안산시 예술단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산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 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⑪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③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3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9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⑦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2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5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⑦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⑧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으로 한다.

③⑨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④⑩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
다.

제10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⑪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④⑫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74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③ 「안산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11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④ 「안산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8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⑤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⑥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⑦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2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한다.

④⑧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⑨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0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2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3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한다.

⑤4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⑤5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6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
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
일로 한다.

⑤7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
다.

제30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8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9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

다.

제17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⓪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①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② 「안산시 수돗물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8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③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3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④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5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3년으로 하되”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차세대위원회의 존속기한) 차세대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⑥6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7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8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협의체의 존속기한) 협의체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⑥9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0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6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로써 그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 후 1년 내에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관 실·과		민원즉심관실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민원즉심관 안 수 진
	담당·팀장 직위·성명	법제담당 김학창
	담당자 성명·전화	이병인 (2477)

부칙으로 개정되는 조례의 조문 대비표

조례 원문	개정안
<p>1.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p> <p>제7조(구성 등) ①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편집위원은 관계공무원, 언론·출판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및 신문·방송관련분야 전공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p>	<p>「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p> <p>제7조(구성 등) ①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편집위원은 관계공무원, 언론·출판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및 신문·방송관련분야 전공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p>
<p>〈신설〉</p>	<p>제7조의2(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 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p>
<p>11조(수당 및 원고료 등) ①편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08> ②일반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기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원고료로 지급한다.</p>	<p>11조(수당 및 원고료 등) ①편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08> ②일반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기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원고료로 지급한다.</p>
<p>2.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p>「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p>〈신설〉</p>	<p>제3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p>
<p>제8조(수당 등) 위원과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8조(수당 등) 위원과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3. 「안산시 민원즉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안산시 민원즉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4. 「안산시 포상 조례」</p> <p>제2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안산시 포상 조례」</p> <p>제2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p>

를 지급할 수 있다.

5.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제7조(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산시위원회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안산시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도시교통국장, 시의회 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주민 3명, 시민단체 3명, 학계 2명 및 관련 전문가 2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개정 2008.02.2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위원회 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7.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하고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안산시 관할 구역내 방범순찰 활동단체의 대표자 및 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관내 소재하는 방범, 순찰, 안보, 보훈등에 봉사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제7조(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안산시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도시교통국장, 시의회 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주민 3명, 시민단체 3명, 학계 2명 및 관련 전문가 2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개정 2008.02.2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하고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안산시 관할 구역내 방범순찰 활동단체의 대표자 및 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관내 소재하는 방범, 순찰, 안보, 보훈등에 봉사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p>④ 시장은 협의체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방범활동 및 민생치안 단체등 각계 각종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위원장은 안산시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p> <p>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⑦ 간사는 안산시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p>	<p>④ 시장은 협의체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방범활동 및 민생치안 단체등 각계 각종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위원장은 안산시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p> <p>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⑦ 간사는 안산시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p>
--	--

〈신설〉

<p>8.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p>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p>	<p>「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p>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p>
<p>9. 「안산시 시세 조례」</p> <p>제9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국장 및 세무부서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p> <p>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p> <p>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p> <p>5. 그 밖에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사람</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지방세 관련 국장 또는 세무부서의 장이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세무조사담당이 되고 서기는 과세전적부심사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⑧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p> <p>⑨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안산시 시세 조례」</p> <p>제9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국장 및 세무부서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p> <p>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p> <p>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p> <p>5. 그 밖에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사람</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지방세 관련 국장 또는 세무부서의 장이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세무조사담당이 되고 서기는 과세전적부심사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⑧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p> <p>⑨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제10조(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

제10조(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세 관련 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부서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세무부서의 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과표담당이 되고 서기는 과세표준 업무담당자가 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10.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9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제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갖춘 민간인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정한 지급대상

2. 제4조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준

3. 제5조의 규정에 정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신설〉

〈신설〉

제10조(수당)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세 관련 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부서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세무부서의 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과표담당이 되고 서기는 과세표준 업무담당자가 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9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제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갖춘 민간인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정한 지급대상

2. 제4조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준

3. 제5조의 규정에 정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수당)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p>11.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u><신설></u></p>	<p>「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u>제9조의2(협의회의 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u></p>
<p>제10조(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p>	<p>제10조(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p>
<p>제13조(수당 등)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u>「안산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u>가 정한 바에 의해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10.31></p>	<p>제13조(수당 등)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u>「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가 정한 바에 의해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10.31></p>
<p>12.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u><신설></u></p>	<p>「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u>제2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u></p>
<p>제9조(설비변상)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u>「안산시 위원회 설비변상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설비변상)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u>「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13.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u>제4조(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u>제4조(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②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②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4조(수당 등)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u>「안산시 위원회 설비변상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수당 등)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u>「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조사활동을 한 위원 2.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에 출석한 위원 3.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자문을 의뢰한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p>	<p>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조사활동을 한 위원 2.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에 출석한 위원 3.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자문을 의뢰한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p>
<p>14.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u>제6조 (위원회의 공개)①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위원회의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u></p>	<p>「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u><삭제></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p>	<p><삭제></p>
<p>제7조 (위원회에의 주민참여)①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설치 근거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p>	<p>제8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①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p>	<p>②주민의 예산편성 참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p>	<p>③위원회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활동할 수 있다.</p>
<p>제8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①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1.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예산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검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p>

<p>3. 예산공청회에 관한 사항</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80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설립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자 3. 기타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p>⑤ 위원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⑦ 위원회 참석 수당 등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u>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u>를 준용한다.</p> <p><신설></p>	<p>3. 예산공청회에 관한 사항</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80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설립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자 3. 기타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p>⑤ 위원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⑦ 위원회 참석 수당 등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u>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를 준용한다.</p> <p>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15.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p> <p><신설></p>	<p>제8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p> <p>「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p> <p>제7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06.5.25></p> <p>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소속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업무담당국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개정2006.5.25>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원, 교육계 인사, 종교인, 법조인, 공인회계사 등 사회단체에 대해 <p>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p> <p>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06.5.25></p> <p>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소속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업무담당국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개정2006.5.25>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원, 교육계 인사, 종교인, 법조인, 공인회계사 등 사회단체에 대해 <p>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p> <p>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18조(수당 등)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u>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6.5.25></p>	<p>제18조(수당 등)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u>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6.5.25></p>
<p>16.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 공시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p> <p>제4조(임기)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안산시 지방재정계획 · 공시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p> <p>제4조(임기)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8조(수당 및 여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u>안산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수당 및 여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u>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17.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신설></p>	<p>「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4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p>
<p>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p>	<p>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p>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산시 위원회설비변상조례에 의한 일비외에 심의수당 등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18.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신설〉

19.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신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제7조(위원회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제6조에 의한 교부대상자 결정등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8.10.12, 2002.10.08〉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99.8.10.12, 2000.3.10, 2000.10.20, 2001.11.29〉

④위원장은 시의원, 대학교수 및 관련 분야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07.26〉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11.17〉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98.10.12, 2000.3.10, 2005.4.20〉

⑦위원회는 재직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위원중 안산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7조의2(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무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및 기술개발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11.17〉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⑤제7조제8항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98.10.12〉

21.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위원회) 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심의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일비외에 심의수당 등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제7조(위원회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제6조에 의한 교부대상자 결정등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8.10.12, 2002.10.08〉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99.8.10.12, 2000.3.10, 2000.10.20, 2001.11.29〉

④위원장은 시의원, 대학교수 및 관련 분야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07.26〉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11.17〉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98.10.12, 2000.3.10, 2005.4.20〉

⑦위원회는 재직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위원중 안산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의3(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무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및 기술개발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11.17〉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⑤제7조제8항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98.10.12〉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위원회) 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심의

하기 위하여 안산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무원, 지역대학교수,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의사결정은 재적위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2.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제3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 3인,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 단체에서 각 5인 이내, 학계, 법조계, 언론계, 공공단체, 노동자 단체 등의 구성원으로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7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0.20>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⑥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안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제34조(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23.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발전소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동에 운영위원회를 둈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발전소를 둔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되며, 위원은 발전소 지역의 주민 및 관계공무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8.10.12, 2005.4.20>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의 선발기준은 통장, 새마을지도자, 기타 주민의 신뢰와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인구수를 객관성있게 감안하여 선출한다.

<신설>

24.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신설>

제5조(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

하기 위하여 안산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무원, 지역대학교수,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의사결정은 재적위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제3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 3인,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 단체에서 각 5인 이내, 학계, 법조계, 언론계, 공공단체, 노동자 단체 등의 구성원으로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7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0.20>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⑥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안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1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발전소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동에 운영위원회를 냈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발전소를 둔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되며, 위원은 발전소 지역의 주민 및 관계공무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8.10.12, 2005.4.20>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위원의 선발기준은 통장, 새마을지도자, 기타 주민의 신뢰와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인구수를 객관성있게 감안하여 선출한다.

제5조의2(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제3조의2(협의회의 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

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25.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6.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실학과 향토문화에 조예가 깊은 사계전문가 또는 문화분야 지역인사,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17조 (수당지급)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7.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신설>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8.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신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문화재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실학과 향토문화에 조예가 깊은 사계전문가 또는 문화분야 지역인사,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 2(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 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 (수당지급)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문화재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29. 「안산시 예술단설치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단의 책임자와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10.08>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1998.10.12, 2002.10.08>
⑥ 단장은 예술단의 년중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해 1월중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제12조(급여 및 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형위원이나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2.05.21>

30.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자문위원회)
①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자료(유물)의 구입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안산시문화원사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향토문화 관련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31.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32.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신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안산시 예술단설치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단의 책임자와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10.08>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1998.10.12, 2002.10.08>
⑥ 단장은 예술단의 년중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해 1월중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의 2(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급여 및 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형위원이나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2.05.21>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자문위원회)
①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자료(유물)의 구입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안산시문화원사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향토문화 관련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 2(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 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3.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

34.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5.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주민
 2. 장애인 관련 전문가
 3. 이용자 대표
 4. 후원자 대표
 5. 여성 장애인
 6.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 〈신설〉

〈신설〉

36.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신설〉

제3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2조(수당 등) 조정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수당 등) 공적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주민
2. 장애인 관련 전문가
3. 이용자 대표
4. 후원자 대표
5. 여성 장애인
6.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4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2조(수당 등) 조정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수당 등) 공적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7.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u><신설></u>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u><신설></u>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함께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되며, 안산교육청 초등교육관련국장, 위스타트마을 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함께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되며, 안산교육청 초등교육관련국장, 위스타트마을 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39.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및 이동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시민단체(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및 이동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시민단체(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u><신설></u>	제17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40.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제6조(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제6조(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의한 환경보전 및 환경관련분야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시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안산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08.04>

<신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무원
2. 친환경상품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 및 산업체 대표
3. 시민단체 구성원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로서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제2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원녹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과 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본조신설 2007.08.02>

4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6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3명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민간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74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추진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의한 환경보전 및 환경관련분야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시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안산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08.04>

제6조의 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무원
2. 친환경상품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 및 산업체 대표
3. 시민단체 구성원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로서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제2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원녹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과 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본조신설 2007.08.0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6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3명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민간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74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3. 「안산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건축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 등 부동산 거래실무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5.5.26>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산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4. 「안산시 경관조례」

제21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5.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2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명사업의 관계 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식견을 갖춘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6.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신설>

제13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7.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안산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건축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 등 부동산 거래실무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5.5.26>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경관조례」

제21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2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명사업의 관계 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식견을 갖춘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p>2.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p>	<p>2.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p>
<p>48.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4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4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9.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0.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p>	<p>「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p>
<p>1. 안산시의회 의장 2.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관할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정보원 관계자 5. 안산(상록·단원)경찰서장 6. 안산소방서장 7. 안산교육장 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또는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 9.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신설></p>	<p>1. 안산시의회 의장 2.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관할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정보원 관계자 5. 안산(상록·단원)경찰서장 6. 안산소방서장 7. 안산교육장 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또는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 9.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6조(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51. 「안산시 건축 조례」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안산시 건축 조례」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52. 「안산시 주택 조례」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대상··시기··규모 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p>	<p>「안산시 주택 조례」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대상··시기··규모 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p>

기 위하여 안산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푸른녹지과장, 건축과장, 하수과장 등을 당연직으로 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신설>

제20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5. 시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되며,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4. 시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하고, 제1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조정당사자인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설>

제4조(임기) 위원회의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은 관련부서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1.5>

기 위하여 안산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푸른녹지과장, 건축과장, 하수과장 등을 당연직으로 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5. 시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되며,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4. 시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하고, 제1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조정당사자인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은 관련부서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1.5>

<p>54.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2조(수당지급)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또는 교통안전대책 반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2조(수당지급)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또는 교통안전대책 반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p>
<p>55.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신설></p> <p>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3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p>
<p>제11조(수당등) 위원회 및 발표회,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1.11></p>	<p>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11조(수당등) 위원회 및 발표회,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1.11></p>
<p>56.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p> <p>제12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경감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및 여비등의 지급에 대하여는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p>	<p>「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p> <p>제12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경감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및 여비등의 지급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p>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12조의2(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p>
<p>57.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p> <p><신설></p>	<p>「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p> <p>제25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p>
<p>제30조 (수당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30조 (수당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58.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p> <p>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산시 보행환경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p>	<p>「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p> <p>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산시 보행환경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p>

다.

④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안산시의회 의원

3. 보행환경 관련 단체인사 및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5. 기타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15조(수당 및 여비)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9.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신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부시장, 도시교통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시의원 2인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대중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0.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위원회의 임기)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1.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신설>

제6조(위원회의 임기)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

다.

④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안산시의회 의원

3. 보행환경 관련 단체인사 및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5. 기타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부시장, 도시교통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시의원 2인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대중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위원회의 임기)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기)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

<p>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p> <p>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p> <p>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62. 「안산시 수돗물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안산시 수돗물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63.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p> <p>〈신설〉</p> <p>제12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p> <p>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p> <p>제14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0조의2(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p> <p>제12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p> <p>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p> <p>제14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64.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p> <p>제3조(평생학습위원회 설치구성) ①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평생학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시와 교육청의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의 장,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p> <p>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7.6.1></p> <p>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p> <p>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p>	<p>「안산시 평생학습 조례」</p> <p>제3조(평생학습위원회 설치구성) ①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평생학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시와 교육청의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의 장,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p> <p>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7.6.1></p> <p>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p> <p>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p>

<p><u>상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65.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신설〉</p> <p>66.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신설〉</p> <p>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관계국장 2인, 시의회의원 3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1인 및 도교육위원회위원 1인,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08.08.0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하되 시 및 교육청 당연직 국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p> <p>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정기 예산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8.08.04></p> <p>67.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이내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가, 이용시민, 주민 대표,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07.11.08〉 ④ 시장은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2007.11.08></p> <p>〈신설〉</p> <p>제16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11.08></p> <p>68.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신설〉</p>	<p><u>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의 2(차세대위원회의 존속기한) 차세대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p> <p>「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p> <p>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관계국장 2인, 시의회의원 3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1인 및 도교육위원회위원 1인,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08.08.0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하되 시 및 교육청 당연직 국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p> <p>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정기 예산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8.08.04></p> <p>「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이내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가, 이용시민, 주민 대표,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07.11.08〉 ④ 시장은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2007.11.08></p> <p>제11조의 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p> <p>제16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11.08></p> <p>「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7조의 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p>
--	--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교육청·경찰서·지방노동청·출입국관리사무소·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2. 거주외국인·시의원·외국인 지원 단체 관계자 등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교육청·경찰서·지방노동청·출입국관리사무소·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2. 거주외국인·시의원·외국인 지원 단체 관계자 등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의 2(협의체의 존속기한) 협의체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69.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0.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수당 등)회의에 참석한 단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수당 등)회의에 참석한 단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1.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제11조 (실비변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제11조 (실비변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72.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88조 (임기)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88조 (임기)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912
----------	------

제안년월일 : 2009. 12. 24.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위원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원회 정비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정함

□ 주요골자

- 위원의 구성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일부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8조 제2항)
- 위원회 정비 규정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제1항)
- 부칙의 충복 및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중 단서 조항 일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함.(부칙 안 제3조 제2항)
-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등 수정함.(부칙 안 제5조 제67항)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제외하고는 남성위원과 여성위원의 비율의 차가 2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제외하고, 위촉직위원은 남성위원과 여성위원의 비율의 차가 2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3조 제2항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초과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부칙 제5조 제67항 중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및 제11조의2를 삭제한다.”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원 안	수정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생략) ② 위원회에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직능별로 다양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위원과 여성위원의 비율의 차가 2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원안과 같음) ② _____ _____ 세외하고, 위원회는 남성위원과 여성위원의 비율의 차가 2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④(생략)	③ ~ ④(원안과 같음)
제9조 ~ 제13조(생략)	제9조 ~ 제13조(원안과 같음)
제14조(위원회 정비) ①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되 특별한 안전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업무보고를 안전으로 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촉된 것으로 한다. ②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쉬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존폐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정비) < 삭제 > _____ _____.
부 칙	부 칙
제1조 ~ 제2조(생략)	제1조 ~ 제2조(원안과 같음)
제3조(중복 및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①(생략)	제3조(중복 및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①(원안과 같음)
②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농업 위원회에서 1회 연임하고 있는 위원은 조례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회에 한하여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_____ _____ 초과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 안	수 정 안
제5조(나쁜 조례의 개정) ① ~⑥ (생략)	제5조(나쁜 조례의 개정) ① ~ ⑥(원안과 같음)
⑦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⑦ ----- -----.
제11조제3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 ----- -----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삭제>